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기관명 : 은혜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이용)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계약은 센터와 이용자가 제공(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가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 ① 계약당사자
 - ② 계약기간
 -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 【계약방법】

1. 기관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① 기관은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기관과 이용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이용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등급갱신으로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4. 계약이 체결(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용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획”을 공단에 통보한다.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별첨1.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참고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비급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보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인수방법) 신원인수 방법은 이용자의 가정(거주지)에 한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 ① 받게 되는 급여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 ② 급여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④ 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성, 연령, 종교, 정치적 신념, 장애, 경제상태 등을 이유로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3. (신원 인수인의 의무)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 제공
 - ② 급여제공기관과 체결된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급여제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존중
 - ④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제15조 【계약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정일 7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③ 센터 장기요양 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때
 - 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별첨1.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수가(원)	본인부담금(원)				비고
		15%	9%	6%	기초	
30분 이상	16,940	2,541	1,525	1,016	-	
60분 이상	24,580	3,687	2,212	1,475	-	
90분 이상	33,120	4,968	2,981	1,987	-	
120분 이상	42,160	6,324	3,794	2,530	-	
150분 이상	49,160	7,374	4,424	2,950	-	
180분 이상	55,350	8,303	4,982	3,321	-	
210분 이상	61,670	9,251	5,550	3,700	-	
240분 이상	68,030	10,205	6,122	4,082	-	

[표3] 이용 한도액별 본인부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한도액	2,306,400	2,084,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15%	345,960	312,510	222,855	205,590	176,550	98,610
9%	207,576	187,506	133,713	123,354	105,930	59,166
6%	138,384	125,004	89,142	82,236	70,620	39,444
기초	-	-	-	-	-	-

[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수가(원)	본인부담금15%(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86,480	12,97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77,970	11,69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7,304